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18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확립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 내용

#### ○ 그 간의 추진 경위

- 2018. 12. :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영등포구↔광주남구)
- 2019. 1. ~ 12. : 사전교류 및 교류협력 공동 관심 분야 협의
- 2020. 01. : 자매결연 실무협의 1차
- 2020. 02. : 자매결연협력사업(안) 부서 의견 조회
- 2020. 04. : 자매결연 실무협의 2차
- 2020. 04. : 자매결연협력사업(안) 확정
- 2020. 04. :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 수립

○ 양 도시의 일반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남구
면적	24.37km <sup>2</sup> (서울시 면적의 4.03%)	60.98km <sup>2</sup> (광주면적의 12.2%)
인구	367,678명 (174,806세대)	217,993명 (92,378세대)
재정 규모	6,598억원 일반회계 6,310억원 / 특별회계 288억원 (재정자립도: 36.02%)	4,109억원 일반회계 4,035억원 / 특별회계 74억원 (재정자립도: 11.38%)
행정 기구	18개동 582통 4,916반 공무원 정원 1,424명	16개동 420통 1,930반 공무원 정원 1,071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과 안양천, 그리고 안양천과 도림천, 대방천이 합류하는 지점</li> <li>▪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li> <li>▪ 정치, 금융, 언론, 업무의 복합기능지역</li> <li>▪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li> <li>▪ 경인지역 사업발전의 근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가람혁신도시와 전남 서·남부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li> <li>▪ 도·농 복합 지역으로 친환경적 창조도시로의 발전 잠재력 풍부</li> <li>▪ 근·현대 전통문화자원과 전통식품자원이 풍부한 문화·식품산업 거점도시</li> <li>▪ 교육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교육특구 지정</li> </ul>

○ 교류 내용

- 문화·교육: 교육환경 개선, 첨단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특화사업 공유
- 경제: 일자리 정책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농특산물 교류
- 행정: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발전 도모

○ 자매결연 체결 예정일자·장소 및 체결방법

- 체결일자: 2020. 5~6월(예정)
- 장 소: 추후협의
- 체결방법: 서명 체결
- 체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등포구와 광주광역시 남구간 교류·협력 추진으로 상호 번영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영등포구의 자매도시는 국내 4개, 국외 3개, 우호협력 체결 1개 도시임.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광주광역시 남구는 빛가람혁신도시와 전남 서·남부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도·농 복합지역으로 친환경적 창조도시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며, 문화·식품산업 거점도시이자 교육하기 좋은 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문화교육특구 도시임.

###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

구 분	도 시 명	자매결연일	구 분	국 가 명	도 시 명	자매결연일
국내	경남 고성군	'95.09.14	국외	중국(북경시)	문두구구	'95.04.21
	전남 영암군	'95.10.17		일본(오사카부)	기시와다시	'02.10.31
	충남 청양군	'95.10.24		미국(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07.10.30
	충북 충주시	'15.07.28		중국(상해시)	황포구	우호협력체결

○ 자매도시와의 주요 교류 사업은 아래와 같음

- 구민의 날, 문화축제 행사 등 교류로 상생발전 도모
- 청소년야영장 및 구민 대상 교육시설 협력
- 스포츠 및 자치회관, 청소년 문화교류
- 창업 및 일자리 정책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전략 공유
- 여의도 봄꽃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 상품 홍보
- 남북교류협력사업 상호 벤치마킹 및 공동 추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첨부된 두 도시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받는 경우 (제의하는 경우 포함) ①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②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③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④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⑤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인적·물적·문화·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자매결연에 앞서 해당 도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한 상호 발전 가능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정도 등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양 도시 간 공동의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로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